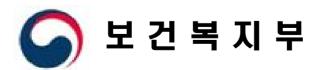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lacement & Management

제7판

2024. 5.



본 지침의 발간 목적 및 연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존재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rogram, PAD program)

- O 제1판 ('10.8.)
 -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기본적인 설치, 운영, 관리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
- 제2판 ('15.4.)
 - 설치 및 관리 주체와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 O 제3판 ('18.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시행되는 개정사항 안내
 - 응급장비 설치 신고기관의 기준 관련 구체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 O 제4판 ('19.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세부사항 추가
- 제5판 ('20.10.)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치·안내 표시 및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설치기관에 준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할 것을 권고
- 제6판 ('23.7.)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설치시설 추가 등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제7판 ('24.5.)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의무설치시설 추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설치 장소 선정원칙 구체화 및 예산 우선지원 대상 추가

목 차

I.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1
Ⅱ.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3
Ⅲ.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 7
Ⅳ.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10
V.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점검13
VI.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 14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 16 2. 사업장 관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세부기준 (고용부) / 22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의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설치·관리 기준 (문체부) / 24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준 / 25 5.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26 6.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 / 27 7. 일반인(AED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 28 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 / 30 9. 자동심장충격기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양식 / 31 10. 자동심장충격기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양식 / 33 11.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등록대장 양식 / 33 1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 35 1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 35 13.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대장(설치기관용) / 36 14. 자동심장충격기 상비관리대장(설치기관용) / 36 1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록(PC, 모바일) / 40 16.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록(PC, 모바일) / 42 17. 사용일지 작성 방법(PC, 모바일) / 47 18. 자주 하는 질문(FAQ) / 50 19.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현황 / 58

20. 시·도청 자동심장충격기 업무담당자 현황 / 59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

- □ **정의**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에 근거)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 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한계

-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 *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 필요한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응급구조 연락을 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심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 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기도 함
 - ☞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O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자동심장충격기의 종류 및 구성

- 종류: 고정형(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차량 등)
- O 기본구성(최소 요건)

구분	세부내용
본체	○ 전원, 표시부, 스피커, Shock버튼, 건전지 등
전극	○ 심폐소생술 패드 등
	○ 전극 패드 연결 여부 확인 및 안내
	○ 환자에 패드 부착여부 확인 및 안내
	○ 시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시행 지시
소프트웨어	○ 시행자 및 주변인의 전기충격에 대한 주의 안내
	○ 제세동 충격 실시 및 안내
	○ 기타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및 안내
	○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본체케이스	○ 본체케이스
사용자설명서	○ 한글버전, 제품구성,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자동심장충격기)를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구성은 기기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 지역. 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버전 탑재도 권장

Ⅱ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O「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O「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O「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시·도 청사
- *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 O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O (부과기준)

이 비해 이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 반행 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3호의2호	50	75	100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원칙

- O 설치 장소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 *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할 것
- O 설치 대수
 -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대수 결정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으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미설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자동심장충격기	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분 이내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 건물 면적이 넓고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가 다수인 경우,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마다 설치를 권장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 고층 건물에서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여러대 설치를 권장

※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예시

-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 가 없도록 함) 및 동별 설치
- 넓은 면적의 체육관, 유원시설 등 →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또는 계단 근처,사람 이동이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매표소 또는 안내소
- 대형 쇼핑몰 → 엘리베이터 근처마다 설치. 안내지도 등 위치 표시 필수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유의사항

-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5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 119구급차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등 이동형장비의 경우 제외(점검 시 해당 없음 체크)
- O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 설치 안내 표시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O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6 참조]
 - * 안내판 파일 다운로드: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 O 시설 안내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층수(위치) 표시
 - 특히, 넓은 면적의 시설에서는 시설 안내지도, 안내(소)책자·팸플릿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 예시 : 관광단지, 유원지, 대형쇼핑몰 등

※ 자동심장충격기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 지정에 대한 안내

- (내용)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외에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 (고려사항) 지자체별 예산 지원 시설과 연계 검토(p.14)
-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별 조례 제·개정(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등)
 - * 조례에 포함할 내용 예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고 시설**, 예산 지원 기준, 관리 방안, 실태조사의 주기 및 세부사항 등

Ⅲ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 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 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 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설치기관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 O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329호, 2016.12.2., 일부개정]
 -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 완료 * 법률 제14329호 부칙 제3조

O (부과기준)

위 반행 위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កាប់ទក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3호의4호	20	40	60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O 신고절차

설치기관		시·군·구 (보건소)		시·도
o 설치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 장비 설치 신고서[붙임8]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o 변경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붙임9]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rightarrow	 관내 응급장비 신고서 접수 응급장비 등록대장 [붙임10] 작성 응급장비 관리 상황 보고서[붙임11]제출 (→ 시도)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rightarrow	○ 관내 응급장비 관리 상황보고서 취합 및 제출(익년 1.31까지) ○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O 신고처(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구 분	신고처
공통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고정된 장소인 시설은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되, -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동수단의 경우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함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 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이 민간이송업체에 위탁 운용 하는 경우 해당 민간이송업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본사-지점 중 지점에 위탁한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건소)
여객 항 공 기	항공기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본사 사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 (예) 대한항공 여객항공기는 대항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보건소에 신고
객 차	객차를 운영·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의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예) KTX객차는 코레일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신고
선 박	원칙적으로 선박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다만, 시·도에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자체 기준 수립·조정 가능) - (예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인 경우는 선박이 등록된 관할 지방해양청이 위치한 소재지 내의 시·군·구 보건소 - (예2)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인 경우는 어선이 등록된 시·군·구 보건소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 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고
- O (신고)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 신고를 권고함
 - 신고절차 및 신고처 판단 기준은 의무설치기관의 신고방법(8쪽)과 동일
 - 신고 시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므로, 변경사유(양도·폐기·이전) 발생 시 변경신고를 통해 장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 O (관리) 동 지침의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10쪽)에 준하여 관리
 -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동 지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할 것을 권고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동 지침의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11쪽)을 참고하여 장비 관리 요망

Ⅳ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 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부) 지정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O 관리책임자의 역할

-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담당 및 보고
 - * 세부 역할은 다음 페이지 참고
 -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유선연락)하고 월 점검 시 [붙임12]에 반영
- 설치기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
 - * 설치기관 운영시간 내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상주(필요시 교대 가능)토록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정기적으로 설치기관의 사용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 공지 및 안내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① 장비관리

- <u>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u>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붙임12] 작성 후 3년간 보관)
 -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장비관리 대장[붙임13]을 작성 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②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app)을 활용하여 사용일지를 등록한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통보로 갈음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사용내역 통보대상에서 제외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③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붙임14]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기관의 관리 운영

O 관리운영 체계도



O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체계 총괄 -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 관리 실태 조사
시·도	○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시·군·구 보건소	 ○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등 신고· 등록·사용·점검현황 파악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응급의료지원센터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신고 접수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대국민·관련기관 정보제공 등

V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점검

□ 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 O 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필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 자세한 일정은 매년 공문으로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설치기관 실태조사 및 관리상황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12월~다음 연도 1월)
 - 전년 동기간에 비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새로 설치한 기관, 폐기한 기관 현황 일제 조사 실시(신고 및 등록 계도·홍보 활동 포함)
 - 조사 결과는, ① 법정 의무설치기관, ② 자율설치기관을 구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서식[붙임11]에 작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를 거쳐 제출

VI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 예산 지원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예산 지원 범위

- O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
 - * 의무설치기관이 AED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 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일반인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 ·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광안내소
 - ·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시설 등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 ①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 ② 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
- ③ 설치 규모
- ④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 ⑤ 기타 지자체장이 우선 고려하는 보건 정책 목표 등

- O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건전지 교환에 대한 지원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 ①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② 미사용 교체 시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물품 자체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http://portal.nemc.or.kr 또는 관리대장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등

□ 예산 지원, 집행 절차

- 각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수요파악,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 O 예산을 교부받은 지역에서는 시·도별 일괄 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단가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시(매년 12월 31일) 각 지역별 집행 내역을 [붙임15]의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음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붙임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구 분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u>공공</u> <u>보건의료기관</u>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9.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11. 「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 조에 따른 구급대 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 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방청장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OOLTHA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 또는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구 분	관련 규정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3. 「항공안전법」 제 2 조 제 1 호 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u>여객</u> <u>항공기</u> 및 「공항 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u>철</u> 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제1조 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구 분	관련 규정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 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u>20톤 이상의 '부선'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u> 법률 제15893호, '18.12.11, 일부개정]
6.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규모 이상</u> 의 「건축법」 제2조 제 2 항 제 2 호 에	규모"란 <u>500세대를 말한다.</u>
때 전 등 제 2 호 제 2 호 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구 분	관련 규정
	6의2. 「산업안전 보건법」 제18조 에 따라 보건관 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 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단당시 및 단당 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시권 광역교통	
다중이용시설 / / 동법 시행령 경제26조의5 제3항 / 제3항 /	철도 및 「도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

구 분	관련 규정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도시철도법」제2조(정의) 2.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 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 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 <u>객</u>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3. 「 항만법 」 제2조 제 5 호 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 •
4. 「관광진흥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 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키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u>경</u> <u>마장</u>	
6. 「경륜·경정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른 <u>경주장</u>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교 <u>도소, 소년교도소</u>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구 분	관련 규정
<u>및 구치소</u> , 「출입 국관리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르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u>소년원</u>	「출입국관리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이용에 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	17개 시·도 청사

붙임2 시업장 관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세부기준 (고용부)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u>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u> 성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u>분산된 장소(지사, 영업소 등)가 독립</u> 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u>사업장 여부를 판단</u>함

※ 독립성 판단 기준

-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로 결정**,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②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이 독자적 결정하는지 여부
-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이 다른지 여부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 판단 예시

-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00명), 매장 b(100명), 매장c(100명)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사)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포함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사업장입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② <u>서울에 본사 a(300명)와 울산공장 b(350명), 여수공장 c(350명)가 있는 석유화학</u>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B사)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a,b,c사 각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5, 8876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의 기를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기준 (문체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의 기준〉

-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의 개념 정의
 -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중 조성 완료 또는 일부 조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임
 - '공공편익시설지구'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세부내용으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 의 구분이 기준이 되며,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함
 -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이란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안내시설이 해당됨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경우 [별표19]의 안내시 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에 해당됨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은 관광지등의 지정 신청 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구분하는 기준
- 2. 공공편익시설지구 외 다른 시설지구에 설치된 안내시설·장소가 자 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 상의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등에 소재하는 다양한 시설 내에 있는 안내시설·장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 예) 관광호텔의 컨시어지, 유원시설의 매표소, 종합쇼핑몰의 안내부스 등

3. 시설 명칭 및 규모에 따른 시설 기준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의 기 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의 명칭과 규모의 제한은 없음
 - * 관광안내센터, 관광홍보관, 관광행정지원센터 등 명칭은 무관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044-203-2892, 2894

붙임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준

-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군·구청장 신청에 의해 시·도지시가 지정
- □ 관광지·관광단지 구분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1강인 시작(다린, 마족 꽃 마족의	1 1 2 2 2 4 7 2 1 2 2 1
시 설 구 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	충분할 것
	내소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미니엄	
다. 운동 · 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경륜장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
		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 • 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할 것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	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점, 관광식당 등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붙임5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 분	주요내용
크기	① 고정형(스탠드형): 2단구조 - 40cm(가로)×30cm(세로)×160cm(높이) 정도 ② 고정형(벽걸이형): 1단구조 - 40cm(가로)×30cm(세로)×30cm(높이) 정도
재질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주요특징	○ 도난경보장치 (관리책임자 실시간 통보 기능 등)
내용연수	○ 본체 : 7~10년 정도 ○ 전극 및 건전지 : 2년 정도

- * 상기 규격 기준은 장비크기 및 설치장소 등 설치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를 참조함(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변경가능)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

좌·우면 문구(예시) 사진(예시) 정면문구(예시) ○ 자동심장충격기 표시(한글. 자동심장충격기 표시 1 영문 등) (한글, 한자, 영문) <투명 아크릴판> ○ 관리책임자 표시 도난방지장치 설치 관리책임자 홍길동 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비상연락처 2023-1234 AED 사용방법 ○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그림 및 설명) 유효기간 2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구분 유효기간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 운영되며 파손 시 환자부착용패드 2020.00.00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건전지 2020.00.00 있음 설치기관 등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부착

* ① 고정형(벽걸이형) 크기 / ②고정형(스탠드형) 크기임

붙임6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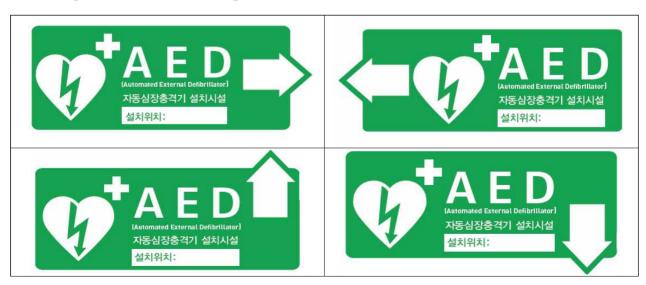
장비설치시설 앞 부착용



(설치위치: 000000000)

- ※ 예시 파일 다운로드 방법 : www.e-gen.or.kr 접속 후 알림·소식 ☞ 공지사항 ☞ 'AED' 검색
-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 (붉은색은 화재/위험의 의미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을 사용토록 권고)

□ 설치장소 유도시 부착용



붙임7 일반인(AED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 동영상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기초) 동영상」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심화) 동영상」
- * (다운로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 ☞ "심폐소생술" 또는 "표준 교육"으로 검색

▷ 지침서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침서」(기초·심화 공통)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지침」(기초·심화 공통)
- * (다운로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 "심폐소생술" 또는 "표준 교육"으로 검색

1.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80분)

	구	분		설 명								
교	육	대	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을 재교육 받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 군 교육, 민방위 교육, 대규모 훈련 등 일반인 대상의 의무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거주 일반인 기타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卫	육 인	정 기	준	 최소한 40분 이상의 실습 포함 자격에 맞는 강사가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강사 대 학생 비율 준수(1:30 이내) 마네킹/AED 대 학생 비율 준수(1:3 이하) 	소한 40분 이상의 실습 포함 격에 맞는 강사가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사 대 학생 비율 준수 <u>(1:30 이내)</u>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심장정지 예방, 목격자 심폐소생술 중요 성,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					
				안전확인, 심정지 인식, 119 신고방법		5						
주	요	내	용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소생술		20						
				심장충격기의 원리와 적용	보면서 따라하기	5						
				심장충격기 실습		20						
								심폐소생술 소개	동영상 시청	5		
				가슴압박 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실습	20						

2.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심화과정(4시간)

	구	분		설 명								
교	유	대	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직업군 · 일차반응자 직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 · 기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화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卫	육 인	정 기	준	·최소 90분 이상의 표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포함 ·표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술기 평가 시행 ·자격에 맞는 강사가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강사 대 학생 비율 준수(1:10 이내) ·실습용 마네킹/자동심장충격기(AED) 대 학생 비율 준수(1:3 이하) ·교육 경력 관리 및 교육 인증서 발급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교육과정 소개		5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설명	25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및 응급의료 관련 법령	220	25						
				휴식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선의의 응 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10						
				안전확인, 심장정지 인식, 119신고방법		5						
주	요	내	용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인공호흡 포함 실습)		40						
	-11-	-11	0	소아 심폐소생술의 소개 및 실습	보면서 따라하기	10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		10						
				심장충격기 실습		20						
				휴식		10						
				영아 심폐소생술(인공호흡 포함 실습)	보면서 따라하기	15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 영아의 기도폐쇄	실습	<u>20</u> 5						
				생존사슬	동영상 시청	5						
				술기평가(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	평가	20						
				과정평가 및 질의응답	0.1	5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20분)

구	분		설 명							
육	대	상								
			교육교재는 [붙임9] 활용							
_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주 요	내	내 용		① 설치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점검등록 등)	이론교육	20				
	육		육 대 상	대 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일반 기초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80분) 교육 후 추가로 교육 교육교재는 [붙임9] 활용 교육 과 정	대 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일반인 심폐소기초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80분) 교육 후 아래 내용 추가로 교육 교육교재는 [붙임9] 활용 교육 과 정 방법 1 설치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붙임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 <개정 2024. 2. 16.>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명칭					전화번호				
	구분	구비 의무기관	[] 119구급 [] 여객 형 [] 총 톤수 [] 보건관 [라광지	전의료기관 대에서 운용 '공기 등 이상 ' 공기론 이상 의자를 두어 및 관광단자 사의 대합실 동차터 미널으 · 소년합운 청사	중인 구급 기 공항 인 선박 야 하는 30 이 소재히 기 대합실 기 경마징 나 기경이 나 가지소	차 [의료 월드 00인 이상 사업 는 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기중인	기관에서 도차량 중 세대 이성 장 ・안내시 나시설의 나장 ・소년원 당행정기관	운용 중인 객차 상 공동주 설 대합실 관 청사	구급차 택	
			건강		료기관	[] 요양				
설치기관			공공시설		비의무기곤 회복지시설 방 • 군사시설 타(보 외 국가 또는 [] 학교 설 [] 종교)	. [청사 찰관서	
		그 밖의 기관	교통시설		하철역 타([] 버스정)	류장 [] 트	백시승강장	
			구급차	[] 특] 일	반 구급체	₹			
			상업시설	[] 사무실 [] 은행 [] 쇼핑몰 [] [] 식당 [] 기타()						
			숙박・여가	기타()					밖의 스포츠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 [] 500세대 미만						
			기 타							
	주소									
	제조국	제조사	제품명 및 모	델명 저	델명 제조번호 기		설치	기위치	설치일자	
응급장비										
оноп										
관리	Ą	성명	주 관리책임	심자(0/X)		직위		전화	번호	
관디 책임자										
「응급의료	로에 관현	한 법률 시	행규칙」 제38	조의2제1항	에 따라 위	의와 같이 응급	장비 설	치를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당	명 또는 인)	
시장 • 군	<u>수 • -</u>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응급장박	비설치 시	실을 확인할 수						수수료 없 음	
				처리	절 차					
신.	고서 제출	→	접 수	→	검 <u></u>		•	결 재		
	신고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 (담당투	시・군・구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부서)			구		

붙임9 자동심장충격기 양도 · 폐기 · 이전 신고서 양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 <개정 2024. 2. 16.>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시				처리	기간		39	일	
	명칭						전	화번호				
	구분	구비 의무기관	의무기관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항만시설의 [] 카지노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소・소년 [] 운동장・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						차량 : 대 0 	중 객차 상 공동 시설 대합실 원	두두탁	
			건강	[] 의료	기관	[] 요양기	l관			
설치기관			공공시설	[[[] 구비의무기관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회복지시설 [] 학교 [] 경찰관서] 국방·군사시설 [] 종교시설] 기타()					•		
			교통시설	교통시설 [] 지하철역 [] 버스정류장 [] 택시승강장 [] 기타()						시승강장		
		그 밖의	구급차]] 특수	구급차		[] (일반 구	급차	
		기관	상업시설]] 사무·] 식당	_	-	음행 [기타(] :	쇼핑몰)	[] 주유소
			숙박•여가	[] 숙박시설 [] 공원 - [] 수영장 [] 헬스장 [] 그 밖의 스포츠시· [] 기타()					의 스포츠시설			
			공동주택	[[] 500세대 미만							
			기 타									
	주소				1							
	제조코	귀 제조사	제품명 및 모	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설	치위치		설치일자
응급장비												
						야스	예정	기과				
	Ç	양도	양도 예정일	フ	관명	01	주소		전화	번호		사유
신고내용				 폐기	 예정일						 유	
근포네능	Ī	ᅨ기		<u> </u>	<u> </u>							
		71 24	이전 (<u>예정</u> 일		0	<u> 전</u> 예	정 위치				사유
	이전											

7171	성명	주 관리책임자(0/X)	직위	전화번호
관리 책임자				
섹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_	<u> </u>	\circ	,	11 91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	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시 • 군 • 구 (담당부서)		시 • 군 • 구 (담당부서)		시 • 군 • 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붙임10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등록대장 양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4 서식] <개정 2021. 8. 10.>

응급장비 등록대장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1. 설		기관	명					개설 성명				
刀:	단	소기	바지									
2. 관리 책임자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간호 조무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	기타
책 인 현:		ブ	1)									
		성	명									
3. 응극	급장비]의 실	 설치	 현황(-	총 설치	대수:	대)					
연번	년번 제조국		제:	<u> </u>		품명 및 군델명	제3	즈번호	제조	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ļ							
					<u> </u>							
					<u> </u>							
첨부시	서류: ·	응급기	상비	설치 •	양도•	폐기 • 이전	신고	! 시 제	출된 🌶	서류		

210mm × 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붙임11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5 서식] <개정 2024. 2. 16.>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장비 기관분류별 설치장비 수/관리책임자 수, 대/명)

									구비.	의무기	기관 설치	장비 수									
				공 공	소	의 료	0=		총 톤	500 세	보건관	관광지			С	·중(기용	음시	널		
 구	분	설치 기관	계	공보건의료기관	방구급대구급차	표기 관 운 용 구 급 차	객 항 공 기 및 공 항	객 차	그수 20 톤이 상선 박	대 이 상 공 동 주 택	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광 단지에 소재하 는 관리 사무소 ・안내 시설									그 밖의 기관 설치 장비 수
	계		/	/	/	/	/	/	/	/	/	/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선 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객 엘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12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자동실	심장충격	격기	점검표				
7	장비정보	제조사 : 제품명 또는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_						
	비유지기간	장비구매일지 본체유효사용 교체예정일지	용가능기한	: 년	일 월 일 일				
/	설치위치								
연번		점기	검항목				결과		
						이상있음	이상없음		
1	본체 작동 상태	· · ·							
	① 본체 작동			상태등	점멸)				
	② 환자 부착용	용 패드 유무							
	•패드 교체 예	정일자 :	년 월	일 일					
	③ 건전지 충전 상태								
	•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2	보관함 상태								
	① 도난경보장	치 작동 여년	1						
	② 보관함 각충	종 안내문구성	상태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④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	자 여부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	전지 유효	기간 표	시 여부				
3	자동심장충격기	기 위치안내	표시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3	표지						
	② 기관내 설치	시 위치 및 병	방향 표지						
4	관리서류 작성	성 및 비치	여부						
5	관리자 변경시					있음	없음		
	① 관리자 이	 름 :	관리자	전화번	호(비상연택	 락처) : 000-0	000-0000		
6	장비 사용 가	•	· ·	· <u>-</u>	, , , , ,				
	① 24시간 이			(2)	 24시간 사·	 용 불가			
		·	1.3			0 = 1			
		점검일 :	년	월	일				
	7	점검자 :			(서명)				

붙임13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대장 (설치기관용)

<설치기관명: 00000 >

м			7.01	교체(예정)	배	터리	패	드	71 71
연 번	장비명	설치장소	구입 일자	일자	구입 일자	교체(예정) 일 자	구입 일자	교체(예정) 일 자	관리 책임자
1	자동심장 충격기	1층 현관 입구	2001.2.2.	2010.2.1.					홍길동

^{*} 위 서식은 예시이며 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붙임1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이론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자동심장충격기의 이론적 배경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2초 사이에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형태의 심장정지 환자들의 대부분은 심장의 부정맥이 그 원인인 경우로,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근 수축이 떨리는 형태로 되면서 심장이 펌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 되므로 의식을 잃게 됨.
 - 성인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부정맥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 허혈에 의해서 유발되며 대표적으로 심실빈맥(VT: ventricular tachycardia)이나 심실세동(VF: ventricular fibrillation) 등이 있음.
- O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은 심장정지의 원인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 하면서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가장 잘 소생하는 형태의 부정맥이나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 환자에게 가슴압박 소생술만 시행해서는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으며, 고품질의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신속한 심장충격을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만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회복 가능
- 심장충격이란 2,000 볼트 이상의 고압 전기에너지 심장을 관통하 게 함으로써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전기적 활동들을 일 시에 모두 잠재우는 역할을 하며, 이 때 심장의 근육세포들은 한 동안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전기적 활동이 가장 먼저 깨어나면서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리로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아닌 심전도 리듬(무맥박 전기활성 또는 심장 무수축)을 보이는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심장충격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시행 해서는 안 됨.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원칙]

-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무조건 심장충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 심장충격기를 부착하여 분석 후,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면 거의 100% 확실하게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환자에게는 즉시 심장충격이 시행되어야 한다.
- 심장충격기를 부착하여 분석 후,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면 정상에 가까운 심전도 소견이거나 심장 무수축이란 의미이다. 이런 환자에게는 즉시 가슴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 주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장충격기를 부착하면 안 되며, 만일 의식이 회복된 사람에게 부착된 심장충격기에서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더라도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심장충격 단추를 누르면 안 된다.

* 출 처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강사 지침서, 보건복지부(2014) P.48-53 내용 발췌 후 수정

** 내용문의 :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I	I	711	
│ ∧	ㅏ엄	JΠ	м

○ **지원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사업 실시 결과(시·도 총괄)

○ 집행금액

총사업비 (국바+지방비)			원
총사업비 (국비)	원	실집행액 (국비) 집행률 (국비) 집행 부진 사유 (집행률 95% 미만 시	원 %
		기재)	

○ 집행내역

자동심장충격기	건전지	패치	기타
총 대 (구비의무기관대 구비의무기관 외대)	개	개	

□ 사업 실시 세부 실적(시·도 총괄)

① 자동심장충격기 내역

※ 구입한 장비 1대 당 한 줄로 작성할 것

		설치현황(AED	설치된 기관	정보)			관리책임자					
CH.		구분1	구분2			단가		현황 				
연 번	기관명	1.구비의무기관 2구비의무기관 외 (번호 기입)	구비의무기 관인 경우 번호* 기입	시·도 명	시·군·구 명	(원) *국비지방비 함계	제조사	지정 여부	지정 인원	교육 이수 인원**		
1	00교도소	1	13	州容	-	2,200,000	가나다	지정				
2	00노인정	2		경기	광명시	2,500,000	마바사	미지정				
3												
4												
5												

- * 기관분류2에 아래의 번호를 기입할 것
- ** 응급의료기금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인원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119구급차 ③ 여객항공기, 공항 ④ 철도차량 중 객차 ⑤ 20톤 이상의 선박
- 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안내시설
- ⑨ 철도역사 대합실 ⑩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⑪ 항만 대합실 ⑫ 키지노 ⑬ 경마장 ⑭ 경주장 ⑮ 교도소, 소년원 등 ⑯ 5천석이상 종합운동장 ⑪ 중앙행정기관(부·처·청) ⑱ 시·도청

② 장비보강(건전지, 패치) 내역

※ 같은 장비일지라도 패드, 건전지 둘 다 지원된 경우 각각 한 줄로 작성할 것

구분 1.기존 기금으로 지원한 장비 2. 식약처 점검결과, 교체 필요장비	보강장비 1. 패드 2. 건전지	보강장비 내구연한	단가(원) * 국비, 지방비 합계	제조사
1	2	3년	20,0000	가나다
2	1	5년	30,0000	21-01

붙임16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록(PC, 모바일)

-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방법
 - (PC등록)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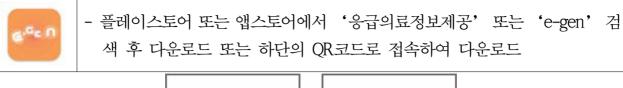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접속 후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로그인 클릭

※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에서 로그인 해야 함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 아이디: 점검을 하고자 하는 설치기관 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 입력
 - · 관리번호: 설치기관의 고유번호로, 설치기관 내 모든 장비 점검이력 관리 가능
 - · 장비연번: AED기기의 고유번호로, 해당 장비의 점검이력만 관리 가능
- 비밀번호: 설치기관 정보입력 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동일
 - ※ 관리번호(장비연번). 비밀번호는 관할 보건소 문의
- 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 점검 이력 화면구성 및 등록·검색 방법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사용법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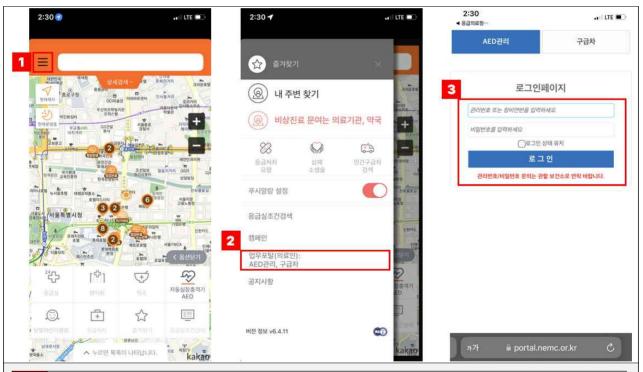
○ (모바일등록)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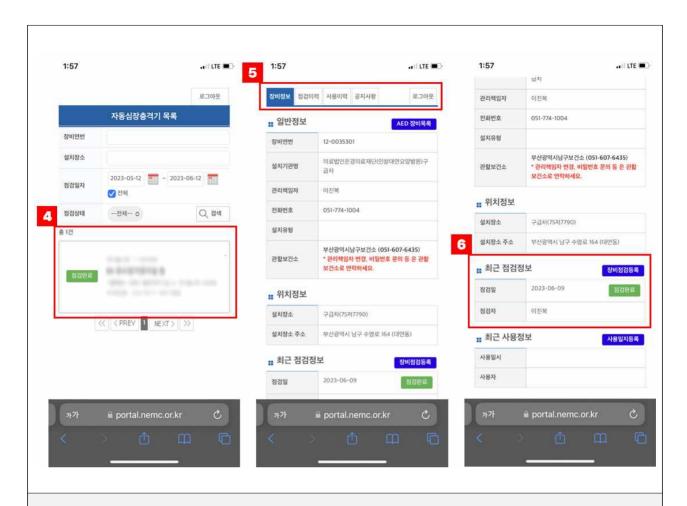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이용 점검



- '≡'버튼 클릭
- 2 업무포탈(의료인):AED 관리. 구급차 선택

AED 아이디 입력

- 아이디: 점검을 하고자 하는 설치기관 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 입력
 - · 관리번호: 설치기관의 고유번호로, 설치기관 내 모든 장비 점검이력 관리 가능
 - · 장비연번: AED기기의 고유번호로. 해당 장비의 점검이력만 관리 가능
- 비밀번호: 설치기관 정보입력 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동일
- ※ 관리번호(장비연번). 비밀번호는 관할 보건소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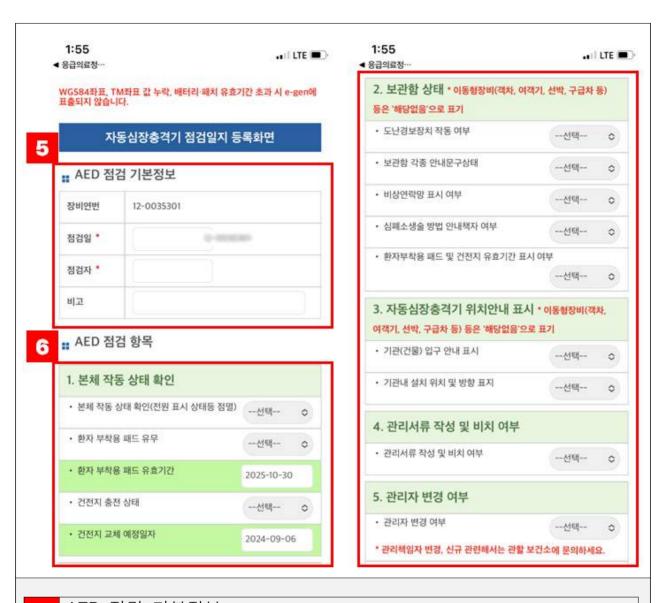


AED 장비 선택하기: 장비연번 또는 설치장소로 구분
- 정보확인 또는 점검·사용이력을 남길 AED 선택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구 분 내용
장비정보 AED의 일반·위치정보 및 점검·사용정보 확인 가능
점검이력 점검 이력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일지 등록 가능
사용이력 사용 이력에 대한 확인 및 사용이력 등록 가능
공지사항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공지사항(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리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등)

최근 점검정보: 최근 점검정보 확인 및 장비점검일지 등록 버튼
- 최근 점검일, 점검자 확인 가능("정비점검등록"클릭>점검일지 등록화면이동)
※ 점검일지 수정은 점검이력 탭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점검 일자
조회 후 수정이 필요한 작성결과 선택하여 수정



AED 점검 기본정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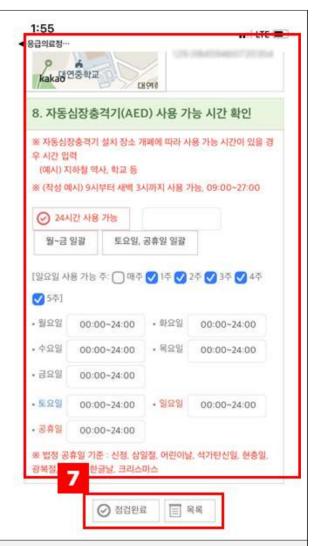
- 점검일, 점검자 및 비고란 입력

점검 항목별 결과 입력

- 보건복지부 설치 및 관리 지침 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내용에 맞춰 구성되어, 항목별 점검사항을 확인 후 이상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

구 분 내 · 자동심장충격기(AED) 본체에 대한 점검상태 이력 확인 본체 작동 상태 확인 · '환자 부착용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는 화면의 달력으로 일자 변견 · 보관함 상태 및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보관함 상태 · 이동형장비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AED 설치 위치 안내 표시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ㆍ 이동형장비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 AED 관리서류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관리자 변경 여부 · 관리자 변경 신고 완료 후 '변경 있음' 선택하여 정보 확인





구 분	내 용				
점검(교체) 여부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AED) 본체 및 장비 부품 점검 및 교체 등으로				
임임(교제) 여구 확인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확인				
VED 사용시절 확이	· AED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AED 사용실적 확인	· 점검일 기준 최근 한달 이내 사용실적 여부(자동 연계)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위치 좌표 수정/확인 가능				
장비 설치 위치 확인	※ 설치 또는 양도(양수), 이전 장비: 좌표 수정> "외부표출				
	하시겠습니까?">"확인"응답>외부 표출				
장비 사용 가능시간 확인	· 설치기관의 운영시간, 즉 장비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한 시간				

점검완료 및 목록 버튼

- 점검내용을 모두 확인 및 입력 후 '점검완료' 버튼 클릭 시 점검내용이 저장됨
- '목록' 버튼 클릭 시 점검이력 목록 메뉴로 이동되며, 입력 또는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장되지 않음

6

붙임17 사용일지 작성 방법(PC,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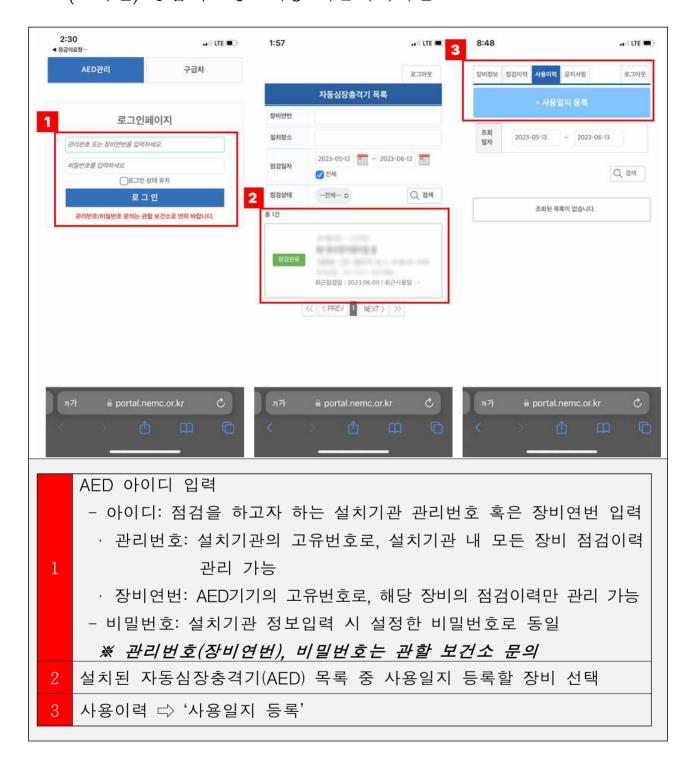
○ (PC 등록)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 아이디: 점검을 하고자 하는 설치기관 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 입력
 - · 관리번호: 설치기관의 고유번호로, 설치기관 내 모든 장비 점검이력 관리 가능
 - · 장비연번: AED기기의 고유번호로. 해당 장비의 점검이력만 관리 가능
- 비밀번호: 설치기관 정보입력 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동일
 - ※ 관리번호(장비연번), 비밀번호는 관할 보건소 문의
- 2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중 사용일지 등록할 장비 선택
- 3 사용이력 ⇨ '사용일지 등록'
- 사용일지 등록 화면구성 및 등록·검색 방법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사용법과 동일

○ (모바일)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붙임18 자주 하는 질문(FAQ)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설치·변경 신고 관련

1. 상	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Q.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사 a(200명) 및 지사 b(150명)가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임대건물(A)에 여러 타 회사가 속해 있는 경우 건물(A)내 자동 심장충격기 한 대만 있으면 되나요?
A.	응급장비 구비 의무설치 시설은 장소적 개념(건물 등)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임대건물에 장비가 구비되어있더라도, 귀하의 사업장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1항제6의2호에 해당 될 경우 1대이상의 응급장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a지역 80명, b지역 50명, c지역 100명, d지역 70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 하여 산정합니다.
A.	* 22페이지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참고 귀하의 사업장이 300명 이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이 각각 있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안내시설이 다수 있는 경우, 모두 자동심장 Q.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제2항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부지 기준이 아닌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특정한 시설인 A.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기준입니다. 즉, 다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무 설치 시설인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O. 추가 설치하여야 하나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방문객의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A. 따라서, 의무 사항은 아니나 방문객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를 권장합니다.

3.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Q.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을 경우 설치 신고해야 하나요?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A.

또한,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고 장비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리책임자 역할은 10페이지 참고

4.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판 표시

Q.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건물 입구에는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되나요? 부착해야 된다면 별도 양식이 있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4항 및 동 지침(p.6)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보기 쉬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안내표시를 반드시부착하여야 합니다.

A.

안내판 파일은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판 파일: www.e-gen.or.kr 접속 > 알림·소식 > 공지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신고

Q.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했을 경우 신고해야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제2호(119구급차,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관리책임자 변경

Α.

O. 장비 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관할 보건소에 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보건소 에서 정보를 수정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A. 또한, 보건소 전송 정보 반영 이후 월 점검 시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앱에 관리책임자 변경 있음으로 체크해주셔야 최종 변경됩니다.(p.46 참고)

7. 장비 양도 및 양수

Q.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장비를 양도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A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B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설치기관 소재지 변경

Q. 설치기관 이전으로 설치장소 주소 및 장비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하셔야 합니다.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앱을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관련

1. 점	1. 점검 대상							
Q.	의무 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점검하고 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나요?							
A.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설치기관에 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설치기관 회원가입 Q. 월 점검 결과를 남기고 싶은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요? 설치기관은 회원가입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장비설치신고 민원 처리 후 점검 로그인 계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I로그인 계정] 구분 내 용 ID 관리번호 설치기관 고유번호, 해당 기관에 설치된 모든 장비 점검 가능 장비연번 AED 고유번호, 해당 장비만 점검 가능 비밀번호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비밀번호 입력

3. 로	3. 로그인 실패							
Q.	로그인 시 "[통합회원] 회원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내 회원 로그인 하단>자동심장충격기 (AED)>"자동심장충격기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구급차 내 장비 보관함 상태

- 자체점검 중 '점검표 내 보관함 상태' 항목이 있는데 점검결과 Q. 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 시스템 점검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Α.

5. 점검 정보 수정/삭제 점검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O. 삭제는 불가능하며, 수정을 원할 경우 아래 화면으로 안내 【과려 화며】 - 화면: 로그인 > 점검이력> 수정할 정보 선택 > 점검수정 선택 10.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가능 시간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개메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이 있을 경우 시간 입력 * (작성 예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용 가능, 09:00-27:00 ❷ 24시간 사용 가능 A. 월~금 일괄 토요일, 공휴일 일괄 Q 검색 [일요일 사용 가능 주: 💹 매주 🕢 1주 父 2주 父 3주 父 점검일: 2020-12-30 • 목요일 점검자: 점검자 성명 00:00-24:00 00:00-24:00 점검결과 : 양호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00:00-24:00 田森別 법정 공휴일 기준 : 신정, 상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점, 한글날, 크리스마스 ⊘ 정검수정 □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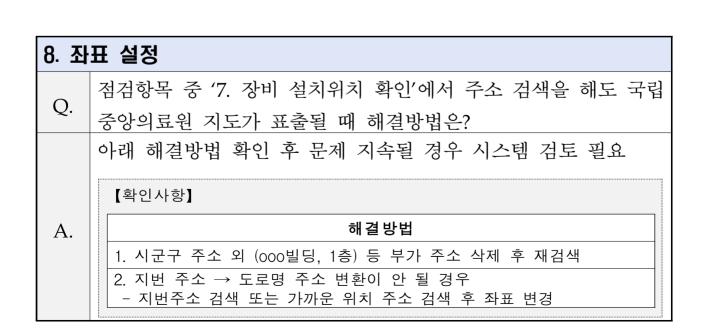
6. 점검 정보 출력 불가

점검 완료 후 출력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O.

아래 해결방법 확인 후 문제 지속될 경우 시스템 검토 필요

【확인사항】 해결방법 A.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2. 정부청사, 공공기관 등의 경우 소속기관 자체 보안 확인 3. 설치기관, 장비 정보에 특수 문자가 포함(예시: { }. "")

7. 점검 정보 출력 오류 장비 사용 가능시간을 "24시간 사용가능"으로 체크했으나 출력 Q. 시 "24시간 사용 불가"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요일 사용 가능 주가 1~5주까지 전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화면】 13:21 10.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가능 시간 확인 장비정보 점검이력 사용이력 공지사항 로그아웃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개폐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이 있을 경 (예시) 지하철 역사, 학교 등 * (작성 예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용 가능, 09:00~27:00 - 2021-01-11 2020-12-11 월~금 일괄 토요일, 공휴일 일괄 Q 검색 Α. [일요일 사용 가능 주: 매주 🗸 1주 🗸 2주 🗸 3주 🗸 4주 점검일: 2020-12-30 00:00-24:00 00:00-24:00 점검자: 점검자 성명 • 수요일 · 목요일 00:00-24:00 00:00-24:00 점검결과 : 양호 • 금요일 00:00~24:00 - 토요일 00:00~24:00 00:00~24:00 00:00-24:00 * 법정 공휴일 기준 : 신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 정검수정 🗏 목록

□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앱의 자동심장충격기 외부 표출 관련

1. 그 밖의 기관 정보 등록					
Q.	법률에 따른 구비의무기관이 아니라도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				
	/앱에 안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그 밖의 기관도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셔야만 장비 등록				
	및 월 점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앱 표출 제한							
Q.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설치 정보가 표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래 항목과 처리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Α.	항 목	처리 방법					
	배터리(패치) 유효기간 초과	배터리 및 패치유효기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만료된 경우 1. 보건소 수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수정 - 화면: AED 등록현황 > 보기(돋보기) > 수정화면 > 배터리 (패치) 유효기간 수정 2. 설치 기관 직접 수정 - AED 점검 - 설치 기관에서 장비 교체 후 월 점검 시 정보 수정(1. 본체 작동 상태 확인)					
	위치 정보(좌표)가 없을 경우	신규 등록 및 이전, 양도 장비의 경우 좌표값이 없음 1. 보건소 수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수정 - 화면: AED 등록현황 > 보기(돋보기) > 수정화면 > 좌표값 설정, 외부표출 허용 2. 설치 기관 직접 수정 - AED 점검 - 설치 기관에서 장비 설치 위치 설정(7.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확인) ※ 신규 설치 또는 양도(양수), 이전 장비의 경우 좌표 수정 후 "외부표출 하시겠습니까?"에 "확인"으로 응답해야 외부 표출됨					

붙임19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현황

연번	지 역	연락처
1	서울 응급의료지원센터	02-2133-7542
2	부산 응급의료지원센터	051-254-3114
3	대구 응급의료지원센터	053-427-0530
4	인천 응급의료지원센터	032-440-3254
5	광주 응급의료지원센터	062-233-1339
6	대전 응급의료지원센터	042-223-5101
7	울산 응급의료지원센터	052-229-3666
8	세종 응급의료지원센터	044-300-5725
9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	031-8008-5641
10	강원 응급의료지원센터	033-748-4911
11	충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43-266-6124
12	충남 응급의료지원센터	041-634-9351
13	전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63-276-9573
14	전남 응급의료지원센터	061-274-1339
15	경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54-441-1339
16	경남 응급의료지원센터	055-286-9548
17	제주 응급의료지원센터	064-710-2337

붙임20 시·도청 자동심장충격기 업무담당자 현황

연번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02-2133-9672
2	부산	보건위생과	051-888-3421
3	대구	보건의료정책과	053-803-6291
4	인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3254
5	광주	감염병관리과	062-613-3353
6	대전	감염병관리과	042-270-4045
7	울산	식의약안전과	052-229-3668
8	세종	보건정책과	044-300-5716
9	경기	보건의료과	031-8008-4344
10	강원	공공의료과	033-249-2987
11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44
12	충남	보건정책과	041-635-2644
13	전 북	보건의료과	063-280-4689
14	전남	식품의약과	061-286-5782
15	경북	감염병관리과	054-880-3875
16	경남	식품의약과	055-211-5085
17	제 주	보건위생과	064-710-2923

^{*}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등 확인 가능